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 인증한 자동차가 없어 제작자가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의 최초 제작자가 안전기준을 보증하는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튜닝 승인 기준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튜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등의 표기 신고 방법 정비(안 제17조제1항)

- 1) 현행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동기 형식은 17자

리가 아니어서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나.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장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범위를 명확히 하고, 튜닝승인 신청 시 튜닝가능 범위를 확대함(안 제36조제2항제1호, 안 제55조제2항제1호, 별지 제25호서식)

1) 제작허용총중량을 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으로 정의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자 등으로부터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튜닝 승인시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작허용총중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튜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튜닝 활성화가 기대됨

다.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제원변경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원동기 최고 출력과 연료소비율을 추가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안 제36조제3항)

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 등(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

1) 기존에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함

마.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개선(안 제39조의5)

- 1) 기존에는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 강도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자기인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기인증한 사례가 없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대수 및 자기인증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절차 개선 등(안 제36조제1항제6호, 제3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 1)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보완
- 2)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 자료를 추가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성능시대행자에 신청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발급 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 중에서 승인은 면제신청하고 튜닝검사만 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안 제5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제78조제2호)

- 1)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 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면제 신청하여 튜닝 승인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작업 및 튜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 개선(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제2항부터 제6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 기타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제39조의4제2항”을 “제39조의4제3항”으로, “확인서”를 “확인서 및 제39조의5의 확인방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축별설계허용하중”을 “제작허용총중량(자동차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 최대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로 제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별설계허용하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통보”를 “통보”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를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으로 변경하거나,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 또는 모델연도를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100대”를 “3년 이내 300대”로, “자동차를”을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자동차
4. 수륙양용자동차
5. 리무진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7.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8.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동차

③ 제1항에 따른 3년 이내 300대 기준에 도달하였거나 3년 이내에 300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3년이 된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로 다시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제21호의 장치”를 “제21호의 장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장치는 튜닝승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에 따른 튜닝승인 면제 확인서를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충중량이 증가되는”을 “충중량(제작허용충중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허용충중량을 적용한다)이 증가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한다.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다.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튜닝승인신청서”를 “튜닝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3호의3 서식의 튜닝승인 면제 신청서(제5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튜닝승

인서”를 “튜닝승인서(튜닝승인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튜닝승인 면제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튜닝승인 면제확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튜닝승인서”를 “튜닝승인서 또는 튜닝승인 면제 확인서”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풍장치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제2항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일시”를 “일시(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이륜자동차대장”으로, “튜닝후의”를 “제5항에 따라 튜닝된”으로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자동차를 제시하도록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안전기준에 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2호 단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제7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기시행통보서
[] 차대번호 [] 원동기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표기 자동차	제원관리 번호	차명 및 형식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양식		
	위치		
	방법		
사업장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표기내용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자 동 차 제 원 표											
1	제 작 자 명 (원 제 작 자 명)			제 작 자 등 록 번 호 (제 작 국 가 명)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대·차체형상			8			구 분				
5	승차정원(명)			9			용 도				
10	차량중량(kg)		()	17	원 동 기	형 식					
11	최대적재량(kg)					최 고 출 력 (ps / r p m)		/			
12	차량총중량(kg)		()			기 통 수 / 총배기량(cc)		/			
13	차체 제 원 (mm)	길이	()	18	연 료 소 비 율	사 용 연 료					
		너비	()			항목 / 모드		복합	시가지	고속	
		높이	()			연비(km/ℓ)					
14	하대 내 측 지 수 (mm)	길이		19	축 간 거 리 (mm)						
		너비			윤간거리(mm)		전				
		높이			후						
15	공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21	하대옵셋트(mm)					
			후축	()	22	변 속 기		종류			
		후	전축	()	23	타 이 어 형 식		단수			
			중축	()		전					
		후축	()		후						
16	적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24	구 동 방 식					
			후축	()	25	차대번호(1 ~ 8자리)					
		후	전축	()	26	모델연도					
			중축	()	27	축별설계허용하중		전		후	
			후축	()	28	제작허용총중량					
29	선 택 사 양										
30	비 고										

유 의 사 항

-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축별설계허용하중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원동기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 사용연료의 종류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연료소비율(km/ℓ)”은 충전소전모드(CD모드)에서의 연비를 말합니다.
- 1회충전주행거리의 경우,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이거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자동차 구동방식(상시4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 등)을 기재합니다.
-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차량총중량은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제시하는 최대허용총중량으로 기재합니다.
- 안전기준 제1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속주행 연료소비율의 경우 “복합모드”에 기재합니다.
- 제작허용총중량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료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을 기재합니다.
(승용자동차 및 미완성자동차는 제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생산대수	
	차종	원동기형식	
	최초제작자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작국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술정보 자료	발행일		관리번호
	구분 []시정조치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 []대상이 불명확한 무상수리 []하자재발통보 []기타		
정비이력	입고일		차명
	출고일		차대번호
	사업장		주행거리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고객불만내용(증상명칭)		원인부품
	원인부품 장치구분		원인부품번호
	진단결과		증상(고장)코드
	작업내용(수리,점검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		특이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결함정보전산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원인부품번호별 원인부품 장치구분 내역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정보자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자동차	제목		관리번호
	발행일		구분 []시정조치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무상수리 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 []대상이 불명확한 무상수리 []기타
	시행일		차명
	생산기간		기술정보자료 발행전 생산대수
	작업시간		소비자불만건수
	소비자불만비율(불만건수/생산대수)		현상(발생원인)
	장치구분		현상구분
	미조치시 발생가능현상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발행한 기술정보자료 사본 1부
------	-----------------------------------

유의사항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대상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특별점검 등의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자동차	제목		조사요청 주체
	조사결과		사고유형
	과실주체		차명
	사고일시		등록번호
	조사일		모델연도
	차대번호		현상(발생원인)
	장치구분		현상구분
	주행거리		에어백 전개여부
	에어백 전개위치 정면([]운전석 []조수석) 측면([]운전석 []조수석) 커튼([]운전석 []조수석) 기타([]운전석 []조수석)		파손부위 []정면[]좌측면[]우측면[]후면 []엔진룸[]실내[]트렁크[]기타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대물피해
	사고장소		사고도로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예/아니오), 분석여부(예/아니오)		운행기록계 장착여부(예/아니오), 분석여부(예/아니오)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행한 기술분석자료 사본 2.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
------	--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튜닝 작업의 시설 및 인력	[] 시설면적(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 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평방미터(㎡)
	[] 검사시설:① 리프트[]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피트 []	
	[]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검사기구(제동시험기 / 정밀도검사 번호: ※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술인력(성명: 자격명: 자격증번호:) ※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하며 기술인력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작성합니다.	

튜닝 작업 범위	[] 길이·너비 및 높이 [] 총중량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튜닝을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승차장치 [] 물품적재장치
	[]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원관리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원관리번호(1개만 기입)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변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한
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합니다)
-------------	--

튜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사항	튜닝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검사대행자가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습니다.
3.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와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튜닝승인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사항	튜닝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 면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튜닝승인 면제 확인서를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습니다.
-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와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제 호				
튜닝승인 면제 확인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차명 및 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원동기형식	
튜닝 승인 면제 내용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제 호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형식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구조	길이×너비×높이	mm	mm
		총중량	kg	kg
	장치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외관도(외관튜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튜닝 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한국교통안전공단		처 리 기 간	1 0 일
수 수 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각 호의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210mm×297mm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 ----- ----- ----- ----- ---- 표기내용설명서-----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의4제3항----- ----- 확인서 및 제39조의5의 확인방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한 서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	②----- -----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3.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

----- 제작허용총중량(자동차 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 최대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로 제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별설계허용하중-----

2.·3.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
-----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으로 변경하거나,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 또는 모델연도를 변경하는 -----
-----.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

----- 3년 이내 300대 -
----- 다음 각 호의 자
동차를 -----.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자동차

4. 수륙양용자동차

5. 리무진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7.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 자동차

8.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3년 이내 300대 기준에 도달하였거나 3년 이내에 300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3년이 된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
로 다시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
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39조
의4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
차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
정) ①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 한 설명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
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
토하게 할 수 있다.

③ -----

-----. 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있다.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

-----.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차축에 한정한다)·제4호·
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
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
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단서 신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
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

1. (현행과 같음)

2. -----

----- 제21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장치는 튜
닝승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56조제2항에
따른 튜닝승인 면제 확인서를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
로 본다.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
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다.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

② -----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 -----

-----.

1. 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허용총중량을 적용한다)이 증가되는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

----- 튜닝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3호의3 서식의 튜
닝승인 면제 신청서(제55조제1
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생략)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

--- 튜닝승인서(튜닝승인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
호서식의 튜닝승인 면제확인서)

③-----
----- 자(튜닝승인 면제확
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

1. (현행과 같음)
2. _____

은 튜닝승인서

3. ~ 5. (생략)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 (생략)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
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
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 튜닝승인서 또는 튜닝승인
면제 확인서

3. ~ 5. (현행과 같음)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

---. 다만, 방풍장치나 제56조
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일시(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
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규정에 의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시한 경우
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
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
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
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확인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자동
차를 제시하도록 통보하여야 하
고, 그 기간 내에 안전기준에 적
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하고, 튜닝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
제4항에 따라 -----

 -- 이륜자동차대장-----

 ----- 제5항에 따라 튜닝
된 -----

 -----.